

# 논문집 편집위원회 운영규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수자원학회 정관 제 5조 및 운영규칙 제 19조, 27조에 의거, 논문집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처리한다.

1. 논문집 편집계획 수립 및 발간
2. 투고 논문의 심사 및 편집

제 3조 (구성 및 운영)

- ①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물에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학술부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간사와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위촉은 수자원 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경험이 풍부한 수자원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
- ③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조 (회의)

위원회는 6개월에 1회씩 정기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5조 (심사위원)

1. 접수된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논문 1편당 3명의 심사위원을 위원장이 선임한다. 단, 기술 노트와 정책노트의 경우에는 1편당 2명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주제와 적합한 전문가로서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제 6조 (심사 및 판정)

- ①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을 검토하여 논문의 적합성, 그림과 표의 작성 및 구성 방식의 적절성, 표준영어의 사용 등을 점검한 후 게재불가(또는 재투고권유) 판정을 할 수 있다.
- ② 심사위원은 14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위원장에게 발송한다.
- ③ 심사판정은 '게재가', '수정', '게재불가(또는 재투고권유)' 로 하며 '게재불가(또는 재투고권유)' 의 판정일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④ 심사위원 2인의 '게재가' 판정이 있으면 그 논문은 게재가 확정된다. 심사위원 2인이 '게재가' 판정을 하였을 경우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위원장 직권으로 '수정후재심'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⑤ 심사위원 2인의 '게재불가(또는 재투고권유)' 판정이 있으면 '게재불가(또는 재투고권유)' 로 하여 반송 처리한다. 심사위원 1인만이 '게재불가(또는 재투고권유)' 판정을 하였을 경우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위원장의 직권으로 '수정후재심'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⑥ 심사위원 1인 이상이 수정으로 판정한 경우에 투고자는 3개월 이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

출해야한다. 단, 필요한 경우 투고자는 3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

⑦ 심사판정에서 수정후재심의 경우 심사위원은 재심결과를 10일 이내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⑧ 심사 판정결과에 대하여 논문 투고자가 이의를 가질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를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처리한다.

⑨ 상기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한다.

#### 제 7조(긴급논문)

①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논문 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은 10일 이내 초심(1차심사)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며,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에는 5일 이내 재심결과를 제출한다.

③ 심사위원 1인 이상이 수정으로 판정한 경우에 투고자는 1개월 이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해야한다. 단, 필요한 경우 투고자는 1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

#### 제 8조(연구윤리위반)

우리 학회 논문집에 기 출판 되었거나 심사 중인 논문에 대해 연구윤리 위반이 제기되었을 경우, 우리 학회 ‘연구윤리규정’에 의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단을 따른다. 단 이 경우, 국문논문집 편집위원회에서는 해당 논문을 담당하는 편집간사와 편집위원장이 지정하는 편집간사 등 2인을 예비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추천한다. 조사 중인 논문의 연구윤리 위반이 최종적으로 판정된 경우 국문논문집 편집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징계조치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건의한다.

1. 심사 중인 논문의 경우 심사 중인 논문해당 논문의 즉각적인 심사 중지 후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는 3년간 투고를 제한한다.
2. 기 출판된 논문의 경우 해당 논문의 즉각적인 게재 무효화 후 이 결정을 논문집에 공지하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의 3년간 투고를 제한한다.

#### 제 9조 (투고요령)

논문의 투고요령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 10조 (논문게재)

심사가 완료된 논문은 게재확정일자 순으로 게재한다. 단, 긴급논문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하여 게재할 수 있다.

#### 제 11조 (논문집 발행)

논문집 발행 회수는 연12회로 하며 발행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2004년부터 시행)

#### 제 12조 (저작권)

①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되며, 논문의 제출 시에 저작권 이양동의서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종전에 발행된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학회가 이미 관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저자가 논문을 본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 13조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의 발의로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 6. 13.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 10. 8. 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 10. 19.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 2. 9.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 7. 8.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 4. 13.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 6. 22.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 1. 29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 10. 13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 6. 12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 12. 4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 4. 26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